

제 1219 호
1985.11.23

발행인: 서울특별시 시장 임 모 관
편집인: 공 모 관 이 광 부
전화: 731-6111-3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95-3337

제	보도국장	공보국장	공보관	공보관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2031 호 :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	2
◎ 규 칙	
제 2119 호 :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	3
제 2122 호 : 서울특별시보안업무시행세칙중개정규칙	4
제 2123 호 : 서울특별시법률고문운영규칙중개정규칙	5
◎ 고 시	
제 791 호 : 도시계획사업(문화시설)시행허가	6

내 용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931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함다.

1985. 11. 23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

㉠ 서울특별시조례제 2031 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 조제 1 항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8 조 (비용부담 및 급수장치의 귀속) ㉠ 제 1 항제 2 항의 공사비는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세대당 또는 건축단위 면적당 일정한 금액 (이하 "정액공사비"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간선배관을 제외한 전용급수장치공사의 거리 및 난이도에 따라 공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정액공사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액공사비외에 150%를 초과하는 부분의 비용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 25 조제 3 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요자가 급수증별간 분리계량을 목

적으로 하는 공사와 기존 수도전을 소유하고 있는 수요자가 전용급수장치의 개조, 수선, 철거등을 요구하는 공사의 공사비는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로 한다.

다만, 기존건물 면적을 제외한 증축 연면적이 165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급수관 (양수기포함) 구경 확대공사는 정액공사비로 한다. 별표제 2 "가 (급수사용료 요율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급수사용료를 격월제로 점점부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1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1985년 12월조정분

조정량의 8분의 6은 종전요율
" 8분의 2는 개정요율

㉡ 1986년 1월조정분

조정량의 8분의 3은 종전요율
" 8분의 5는 개정요율

3.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급수사용료를 매월 점점부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1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1985년 12월 조정분

조정량의 2분의 1은 종전요율
조정량의 2분의 1은 개정요율

(별표제 2)
가. 급수사용료 요율표

구분	1 개 월 기 본 요 금		초 과 사 용 료	
	기 본 수 량 (㎡)	기 본 요 금 (원)	사 용 구 분 (㎡)	㎡ 당 단 가 (원)
제 1 종	30	8,270	31 - 200	410
			201 - 300	550
			301 이상	700
제 2 종	20	2,100	21 이상	260
제 3 종	10	600	11 - 30	79
			31 - 50	174
			51 이상	230
제 4 종	500	273,000	501 이상	880
제 5 종	500	54,000	501 이상	140
제 6 종	사 용 수 량 1 ㎡ 당 170			
제 7 종	100	5,000	101 이상	50
제 8 종	사 용 수 량 1 ㎡ 당 410			

※ 사설 소화전 기본요금 월 1,100원
(1년분을 1회에 징수할 수 있다)
으로 하고 연습사용료는 제 6종 요율
에 의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시행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5. 11.23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㉞

◎서울특별시규칙 제 2119 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시행규칙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6 조의 1 항 2 호를 다음과 같이한
다.

제 16 조 (업종별 조정) ①의 2 기
타종별: 개월 또는 격월 조정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시행세칙중 개정 세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5. 11. 23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

㉠ 서울특별시규칙제 2122 호

서울특별시보안업무시행세칙중개정세칙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시행세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협의회는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산업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관리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국장, 상하수국장, 민방위국장으로 구성하며, 구협의회는 당해 구청장, 부청장, 총무국장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7 인내지 10 인이내의 과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협의회위원장은 위원의 수를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제 3 조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협의회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구협의회위원장은 당해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청장이 된다.

제 6 조제 1 항중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구청 : 총무국장

제 6 조 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본청, 산하기관 및 지방공사의 장은 각실, 국 주무과장 또는 담당관을 분임 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하며, 분임 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속 실, 국의 보안업무중 규칙 제 66 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 다만, 과제가 없는 기관에서는 각 계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 19 조제 1 항 단서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분실에 따른 과실 또는 부주의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의조치하여야 하며, 2 회이상 분실시에는 경위서를 받아, 훈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2 조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밀문서 수발사무는 일반문서수발부서에서 담당하며, ㉡ 급비밀 취급인가가된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제 32 조의 3 (비밀관리기록부의 이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밀관리 기록부를 신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기하여야 하며, 이기한 후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비밀관리 기록부에 받아야 한다.

㉤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비밀

관리기록부에 이기할 때에는 구비
 밀관리 기록부의 근거란에 신비밀
 관리 기록부에 이기년월일을 기록
 하고 보관 책임자가 날인후 적선
 으로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
 행한다.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규칙중 개
 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5.11.23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㉑

◎ 서울특별시규칙제 2123 호

서울특별시법률고문운영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규칙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 조 제 1 항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86.1.1 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사건의 사례금지급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위임 진
 행중인 사건이 이 규칙 시행후 승
 소 판결된 사건의 사례금은 이 규
 칙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별표)

소 송 위 임 료 지 급 기 준

구분	지 급 기 준		
	내 용 (소송물가액)	기 준 액	
소송별		착 수 금	사 례 금
		민	사
소 송	1. 신청사건	60,000 원 (단, 경매 는 100,000 원)	① 90% 이상 승소시는 착수금의 150%
	2. 경미 또는 동일성 사건	50,000 원	② 60% 이상 승소시는 착수금과 동일
	3. 전항이외의 본안사건		③ 소취하 (쌍불취하 포 함) 시는 착수금의 반액 (단, 조건부 취 하는 제외)
	① 100만원 이하	100,000 원	
	② 100 " 이상	150,000 원	
	③ 500 " "	240,000 원	
	④ 1,000 만원 이상	400,000 원	
⑤ 3,000 " "	700,000 원		
⑥ 5,000 " "	900,000 원		
⑦ 1억원 이상	1,500,000 원		

구분	지 급 기 준		
	내 용 (소 송 물 가 액)	기 준 액	
소송별		착 수 금	사 배 금
	㉔중요사건 (당시 행·재 정에 큰 영향 예상사 건) 4. 환송심	1,000,000원 - 1,500,000원 원심의 1/2	
행정소송	1. 신청사건 2. 각심본안사건 3. 중요사건 (당시 행· 재정에 큰 영향 예상 사건)	60,000 원 300,000 원 (단, 소가액 3천 만원 이상은 민 소와 동일) 1,000,000 원 -1,500,000 원	상 동
공통	1. 인지대 2. 송달료 3. 검증비, 감정비 4. 출장여비 5. 기 타	실 액 실 액 실액 (단, 소송대 리인 수행시 30,000 원 별도로 지급) 출장여비규정, 제 1 호 적용 실 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고 시 </div> ㉔서울특별시고시제 791 호 도시계획사업 (문화시설) 시행허가		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되고, 서울 시고시제 315 호 (84.5.26) 로 부지조 성허가된 강남구 서초동산 130-6 일 대 예술의전당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제 1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 서울시고시제 75 호 (84.2.4) 로 도		제 24 조 제 1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제 6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제 3 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11.23.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서초동산 130-6 일대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 (문화시설)

명칭 : 예술의전당 신축

다. 사업시행규모

1) 시행면적 : 193,123 m²

2) 사업내역

○ 예술의전당 건립

- 건축면적 : 24,414.64 m²

- 연면적 : 73,862.43 m²

- 동 수 : 5 동

- 기타 부속시설 : 1 식

○ 우면산 터널일부

- 상행선 : 80.47 m

- 하행선 : 82.84 m

라. 사업시행자 주소 : 종로구동숭동 1-130

성명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년월일 : 허가일로부터 30 일 이내

2) 준공예정일 : 87.12.30

바. 위치 및 계획평면도 : 별첨 (생략)

사.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 별첨 (생략)